

〈개인연금저축〉

그린·라이프부부 연금보험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개인연금저축)

그린·라이프 부부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개인연금저축)
그린·라이프 부부연금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제 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특실)에 정한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 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실)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 됩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② 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 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 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③ 이 계약 체결후 새로이 제 1항에 해당되는 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사망 또는 제1보험기간중 「별표 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 1급의 장해」(이하 "제 1급의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된 후 새로이 제 1항 제 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제 3조 (계약의 효력)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④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주피보험자가 사망한후 종피보험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조의 2(계약의 세지혜택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이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 및 연금액(배당금 포함,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면제(이하 "이자소득세 면제"라 합니다) 받습니다.

② 제 1항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지 또는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 각호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경우
3. 천재지변
4. 계약자가 퇴직한 경우
5.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휴업 또는 폐업
6.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7. 계약자가 3개월이상 장기간의 입원치료, 요양을 요하는 상태 또는 질병 발병시
8. 기타 재정경자원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 1항의 이자소득세 면제의 경우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제 3조의 3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 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시류, 사진, 그림도면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① 회사가 제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 1항의 돌려드리기로 한 날의 다음날로 부터 돌려드리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 4조의 2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총 5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제 5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① 이 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2호에 정한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연금수익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 2호에 정한 생존연금이외의 보험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를 보험금수익자로 합니다. (이하 "연금수익자"와 "보험금수익자"를 합하여 "수익자"라 합니다)
② 연금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주피보험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 5조의 2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있는곳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 제 6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제 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중 사망하였거나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사망보험금

2.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때 : 생존연금
 3.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배우자 생존연금
 4.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중 사망(제 1급의 장해상태 제외) 하였을때
: 사망급여금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의 제 1급 내지 제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 1항 제 1호 및 제 4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증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 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제 1항 제 2호 및 제 3호의 경우 살아 있을 때란 제 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한 경우로 합니다.
- ⑤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⑥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4호 및 제 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⑦ 제 1항 제 1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또다시 제 1항 제 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 8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③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에 의하여 적립된 금리차보장 준비금 및 계약자배당 준비금을 매년 회사에서 정한이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연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 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 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
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항 제 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0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 1급 내지 제 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기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들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 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받은 보험료중 많은 금액
을 돌려드립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및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강액하며, 그 초과 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 드립니다.

⑤ 제 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지난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따른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 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4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 1항의 정반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날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함)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 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7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 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3항, 제 3조(계약의 효력), 제 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8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 1항 제 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9조 (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8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자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1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생존연금 또는 배우자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 ⑥ 생존연금, 배우자 생존연금,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0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의자)는 회사의 사업 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 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항 제 1호 또는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험금, 사망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9조(보험금등의 지급)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의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마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납입보험료
2. 보험금 수의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의하여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9조(보험금등의 지급) 제 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제 3조의 2(계약의 서재혜택등) 제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연금지급개시전에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부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가 제 1항 제 2호의 보험금수의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제 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3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금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3조의 2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납입보험료, 보험금과 각종 급여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8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 월납입보험료 1만원, 주피보험자 남자40세, 전기월납, 단위 : 원)

경과년수		1년	3년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남 입 보 험 료		120,000	360,000	600,000	1,200,000	1,800,000	2,400,000	3,000,000
(1종) 정액형	55세연금개시	64,590	313,240	606,820	1,483,900	2,660,080	—	—
	60세연금개시	64,840	314,150	607,860	1,484,350	2,654,350	4,175,080	—
	65세연금개시	64,710	313,520	607,110	1,482,620	2,651,480	4,171,290	5,953,360
(2종) 정 액 체증형	55세연금개시	64,580	313,210	606,750	1,483,550	2,658,850	—	—
	60세연금개시	64,830	313,900	607,760	1,483,870	2,652,710	4,170,010	—
	65세연금개시	64,700	313,470	606,980	1,482,060	2,649,640	4,165,690	5,936,720
(3종) 물 가 연동형	55세연금개시	64,580	313,200	606,730	1,483,490	2,658,770	—	—
	60세연금개시	64,830	313,890	607,740	1,483,820	2,652,650	4,169,960	—
	65세연금개시	64,690	313,460	606,970	1,482,020	2,649,580	4,165,610	5,936,400

주)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모두 생존시의 환급금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급여명	지급사유	지급액	
		주피보험자	증피보 험자
사망보험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 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기납입보험료×(1+0.05×경과 년수) 단. 경과년수는 계약일로부터 사망일까 기간으로 낮아만 철상	주피보험자의 50% 지급
보험료 납입면제 (약관 제7조 제2항)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 자가 사망 또는 제1~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면제	
생존연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2호)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초년도연금액 2차년도 이 후 연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초년도 생존연금액 『(별표2) 초년도 생존연금연액예시표』 참조 (1종) 정액형 초년도생존연금액을 평생지급 (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2종) 정액형 초년도생존연금액에 매년 초년도 생존연금액 의 5%씩 차등화 금액을 매년 계약해당일에 평생지급(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3종) 물가연동형 초년도 생존연금액을 매년 실제 물가 상승률로 차등화 실제연금과 예전 물가 상승률(7%)로 차등화 예전연금을 물가를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11차년도 이 후
배우자 생존연금 (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주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증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 생존연금액의 50% 지급 (단, 10차년도 연금까지 보증지급)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사 망하고, 증피보험자가 제2 보험기간 개시일 10년 이후 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일에 살아있을 때	제2보험기간 개시일 10년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주피보험자 생존연금액의 50% 지급	
	주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일 10년이후에 사망하 고, 증피보험자가 매년 계 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주피보험자 생존연금액의 50% 지급	
사망급여금 (약관 제7조 제1항 4호)	주피보험자 또는 증피보험 자가 제2보험기간 중 사망 하였을 때(제1급의 장해상태 제외)	초년도 생존연금연액의 2배액	주피보험자의 50% 지급

주) 1. 보험기간 구분

제 1 보 험 기 간	제 2 보 험 기 간
책임개시일로부터 주피 보험자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연금지급 개시일로부터 종신까지

2. 실제 물가상승률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해당기간의 연간 물가상승률을 말합니다.
그러나, 해당기간의 최종월 지수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중 발표된 최근월의 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그 이전의 연간물가상승률을 적용합니다.
3. 연금지급개시후 10년이내에 피보험자 사망시 10차년도까지의 생존연금은 이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4. 생존연금은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매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초년도 생존연금연액 예시표

* 가입연령별로 연금지급개시연령 및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초년도 생존연금연액이 다르며, 해당계약의 초년도 연금연액은 보험안내장 및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준 : 월납입보험료1만원, 주피보험자 남자, 전기월납, 단위 : 원)

연 개 연 금 시 령	가입 연령	(1종)		
		정액형	(2종) 정액체증형	(3종) 불가연동형
55세 연금개시	20	1,272,760	889,050	850,800
	30	552,100	385,690	369,100
	40	210,520	147,070	140,750
60세 연금개시	20	1,917,590	1,382,230	1,303,400
	30	839,930	605,520	570,970
	40	343,190	247,420	233,320
	50	112,830	81,360	76,730
65세 연금개시	20	2,905,990	2,167,650	2,016,340
	30	1,245,490	929,180	864,320
	40	511,900	381,930	355,280
	50	193,430	144,360	134,290

주) 가입연령은 주피보험자 연령임

[별표 3]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류 항 목	분류 번호
17.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R99
19.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유독성 물질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가해	X85 ~ Y09
26.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전염병 예방법 제 2조 제 1항 제 1종에 규정한 질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전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킬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Y35.5)

[별표 4]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가슴, 배,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가슴, 배,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4급의 5부터 11까지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p>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 가락을 잃었을 때</p> <p>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척추에 뚜렷한 비정상적 형태 또는 심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4급 (제2급의 참고사항 임)	<p>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p> <p>4. 가슴, 배,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p> <p>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p>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p>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장해등급 분류 해설>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 신장·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실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작용 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미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미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 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중주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1000,2000,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감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 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통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척추의 뚜렷한 비정상적 형태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비정상적 형태"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애"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하기, 좌우굽하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마디(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끝에서 둘째마디(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가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끝에서 첫째마디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마디 또는 끝에서 둘째마디(첫째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가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6,7,8,9, 제2급의 3,4,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